

협약서

원주시 의용소방대 연합회, 원주시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 (이하 "갑" 이라 칭한다)와 성지의료재단 성지병원 (이하 "을" 이라 칭한다)간에 진료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하고 그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.

◀ 아 래 ▶

제 1 조 (목적)

본 협약은 "갑" 이 "을" 에게 위탁한 "갑" 의 임직원에 대한 질병 진료, 건강검진과 관련한 업무 등을 "을" 이 지정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신원확인)

1. "갑" 의 임직원 회원이 본 협약에 의거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회원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
2. "갑" 의 회원이 본 협약에 의거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접수 시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회원임을 알려야 한다.

제 3 조 (진료비 및 이용료 감면)

"을" 은 "갑" 의 임직원의 성지병원 진료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감면한다.

구 분	할인대상	할인율	비고	
1. 종합건강검진	의용소방대원	20%	개인종합검진에 한함	
2. 입원, 외래진료 본인부담금		각 15%	-	
3. 비급여 진료(MRI, 초음파, 상급병실 이용료 등) 단, 수술재료대 제외			-	
4.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				50%
1. 종합건강검진	20%			개인종합검진에 한함
2. 입원, 외래진료 본인부담금	직계가족	10%		-
3. 비급여 진료(MRI, 초음파, 상급병실 이용료 등) 단, 수술재료대 제외				
4.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			50%	

제 4 조 (계약기간)

본 계약기간은 2013년 04월 25일부터 2015년 04월 24일 까지 2년으로 한다. 다만,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"갑" 과 "을" 쌍방 간에 30일 전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계약 해지 처리된 것으로 하며 쌍방이 계약해지 의사 표시가 없을 때에는 매 1년씩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.

제 5 조 (기타)

"갑" 의 임직원 건강검진 시 "을" 을 지정병원으로 하고 "을" 은 성심성의를 다해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.

제 6 조 (변경 및 해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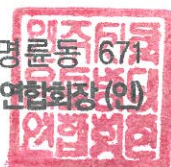
본 계약에 대하여 "갑", "을" 은 서로 상호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 7 조 (어구의 해석)

본 계약상 어구 해석에 대하여 "갑" 과 "을" 간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.

2013년 04월 25일

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671
원주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(인)



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671
원주시 여성의용소방대 연합회장(인)



강원도 원주시 인동 264-21
의료법인 성지의료재단 병원장(인)

